

제26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  
전문위원 정 우 숙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8
- 나. 제 출 자: 최동철 의원 외 6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2월 10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## 2. 제정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구민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환경친화적 자동차,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
- 라.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(안 제4조)
- 마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매,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(안 제5조~7조)

바.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
(안 제8조)

사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합 의: 녹색환경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2. 11. ~ 2. 15.)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내용

1)[안 제1~2조]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2)[안 제4조] 보급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수립
-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 충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

3)[안 제5조]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에 관한 사항

-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시, 일정 비율 이상을

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음

4)[안 제6조] 충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
5)[안 제7조]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

5)[안 제8조] 홍보 및 교육

-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음
-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,
-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가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**

- 제10조의2(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
**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- 제18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(이하 "구매"라 한다)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
  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 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

3.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,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